

독일판례 1

법정에서 심리 되었던 사건을 보도한 경우에 있어서 편집자의 민사책임

쾰른고등법원

1986.9.16 자 판결 -15U 38/86 사건-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1 항, 847 조, 823 조 2 항,

독일형법 제 185,186,187 조

판결요지

1. 중대한 형사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고인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묘사하여 보도한 경우에도, 그 보도가 시사성(aktuell)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는 허용된다. 그러나 그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이후에는 그 범죄자 인격권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있어서 그 시사성 유무의 한계는 확일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정보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그 범죄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상응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신문의 기사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것에 대하여는 부분(Ressort)편집인이 책임을 진다. 부분편집인이 아닌 책임(총괄)편집인의 책임은,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됨으로 인하여 민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문제로 되는 것이다.

사실개요

원고는 1983년 7월 30일에 어느 여자를 강간하였다. 위 범죄로 인하여 원고는 1983년 11월 23일에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1984년 6월 29일자 「X」 화보잡지의 어느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24세 된 Ursula L.이라는 여자는 일년 전부터 밤마다 이러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A라는 작은 도시 출신의 위 젊은 여자는, 어떤 남자가 1983년 7월 29일에 그 여자에게 저지른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즉 백정이었다가 현재 실업중인 23세의 H(그 이름은 위 기사에서 삭제되어 있다)가 그 여자를 강간하고, 그 여자에 대하여 성도착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원고는 위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리하여 위 출판사와, 원고의 생각으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두 사람의 편집인에 대하여 위자료의 청구를 하였다. 지방법원은 위 3사람의 피고 모두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1만 마르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고, 위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이유

피고 M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 B 및 피고 출판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신문기사는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개인의 일반적인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록 진실한 보도라고 할지라도 그 보도가 피해자의 내적인 영역에 관계되는 것이라거나, 또는 까닭없이 피해자의 잘못이나 결점을 폭로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신문등에 보도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형사범죄에 관한 시사성 있는 보도는 허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대중의 정보에 관한 관심이 이 경우에는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 스스로가 그 자신에 관한 것이 문제로 되도록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형사 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이후에는, 다시 인격권이 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상태는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보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그 범죄행위의 종류 및 그 중대성에 따라 비로소 정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중대한 형사범죄를 법률적인, 범죄학적인, 사회학적인, 또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위하여는 최종의 구두변론 절차가 종결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안을 신문에서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것은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족한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점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형사범죄에 관하여, 위 기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매우 작은 규모에 지나지 아니한다. 즉 강간의 피해자인 위 부인의 고통은, 원고의 범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끔찍한 사건들과 함께, 독자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그들의 관심을, 「여자들은 어떻게 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의 점으로 끌도록 하는 데에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위 사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묘사·기술하였다는 점은 물론 다투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는 원고의 성과 그 이름, 그의 나이, 대략의 주소 및 완전히 위장되지 않은 그의 직업(원고는 2년 동안 백정으로 일해왔다) 등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원고를 완전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성을 가공적인 것으로 하거나 또는 단지 이름만을 기재한다 하더라도(예를들면, A 신문은 시사성 있는 보도에서 그렇게 하였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이 있는 지 이미 7개월이 지났고, 또한 원고가 구속된 상태에서 그의 형기의 상당부분을 복역함으로써 그 시사성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위 강간의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은, 그 기사보도는 아직도 시사성이 있는 것이라고, 피고들이 생각한다면 이는 옳지 않은 것이다. 만약 피고들의 위 주장이 옳다고 하면, 치료할 수 없는 신체의 상해나, 또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의 경우에는, 그 시사성은 결코 소멸될 수가 없을 것이다. 피고들은, 그들이 당원의 구두변론에서 최초로 진술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원고가 강간했던 위 여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보상을 해 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신문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단지 확대된 시사성의 범위 안에 있어서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로써 시사성의 요건이 무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기사는, 위자료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 위 잡지가 널리 배포됨으로써, 원고나 또는 원고의 가족들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의 범행은 전혀 알고 있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원고를 만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는 이제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그때까지 원고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까지도, 원고는 혹시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의 과거의 행적을 전해 듣지나 않았을까 하는 점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걱정들은 원고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원고를 괴롭히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밖에도 위 책임을 져야 할 피고들은, 언론인들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는 독일 언론연맹이 작성한 언론헌장(Pressekodex) 제 28 조 2 항의 규정을 전혀 무시하였다는 점도 역시 이를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원고가 입은 위 피해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리 이를 보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II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B 피고가 책임 있고 따라서 원고의 B 피고에 대한 소는 정당하다. 위 기사는 그 목차에 있어서는 「시사문제」라는 항목에 게재되었다. B 피고는 위 잡지의 간행요목 (Impressum)란에는 「시사문제 담당자」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당원의 구두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표시는 위 B 피고가 위 분야에 관한 「부분편집인」 (Ressort-Redakteur)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징표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위 부분편집인이기 때문에 그는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Löffler, Presserecht, § 6 LPG Rdnr.78 und § 9 LPG Rdnr.50).그리고,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가 위 기사를 스스로 작성하였느냐의 여부는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정사의 의무가 있으므로 따라서 그는 위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하였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 편집인은 신문의 기사내용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음과 동시에, 나아가, 제 3 자의 인격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행인에 의하여 그에게 주어진 과제로부터 이 부분편집인에 대하여는, 그가 관계한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들은 위 B 피고에 대하여는 타당하다.

2. 이에 반하여 M 피고는 아무 책임이 없다. M 피고는 그 간행요목에 시사문제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Verantwortlich)고 표시되어 있다. 피고들은 그들의 준비서면과, 위 출판사의 법제부가 작성한 준비서면 및 변호사가 작성·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만약 신문사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 「책임편집인」 즉, 위 M 피고에게 이를 전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 있다고 해서, 당원이 제기된 신청자체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편집자의 지위로부터는 오로지 형사적인 책임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Kübler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Festschrift für Mallmann Seite 169ff) 이로부터 민사책임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다. 그리고 연방대법원도 역시 이미 언급한 판결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zutreffend Löffler, §9 LPG Rdnr.40). 그러나 독일민법 823 조 2 항 및 독일형법 185,186,187 조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구성요건이 실현됨으로 인하여 바로 민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책임편집인에게도 민사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Soehring, Afp 1977,330)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명예의 보호는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민사재판관할권으로 넘겨져 갔다는 생각이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비로소 책임편집인은 부수적인 검사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독일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있어서는, 위 법원이 비방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독일형법 제 185 조가 적용되었었다. 그러나 진실하지는 않지만 명예에는 관계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밖에 회화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편집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끌어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건의 경우가 바로, 형사상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면서도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로서, M 피고는 책임편집인으로서, 그 책임이 없는 것이다. 위 M 피고가 B 피고 이외에 따로 「시사문제」에 관한 부분편집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M 피고가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3. 출판사인 피고는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B 편집인은 독일민법 831 조의 의미에 있어서 출판사의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판사인 피고는 그에 관한 면책의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에게 이제 와서 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점에 관하여는 이미 1심 판결에서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III

지방법원이 고려하였던 여러 가지의 관점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1심 법원의 위자료의 액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